

●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-188호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8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」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개를 도살·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,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95호, 2024. 2. 6. 공포, 2024. 8. 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
(안 제2조)

나.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
(안 제3조 및 제4조)

1)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

2)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.

다.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5조)

- 1)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,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- 2)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- 3) 신고일자 기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미이행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- 4)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 시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4항)
- 5) 농장주에 대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5항)

라.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, 기준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6조)

- 1)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1항)
- 2)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3) 전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폐업 등의 지원 규정(안 제5조)을 준용

토록 함(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)

마.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·기준 등 규정(안 제7조)

1)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(안 제7조제1항)

2)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
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토록 함(안 제7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
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
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
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
- 전자우편 : bcl1101@korea.kr
- 팩스 : 044-868-0134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(전화 044-201-2292, 팩스 044-868-013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④ 법 제8조제4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이란 기획

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말한다.

⑤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폐업 등의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“신고”라 한다)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(이하 “이행계획서”라 한다)를 제출한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·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식용 도축상인”이라 한다)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

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·판매하는 자(이하 “개식용 유통상인”이라 한다)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1. 법 공포일 이후에 신규 운영한 경우
2. 신고일자 기준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법 공포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3.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건축법」 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2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제1항에 따른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농장주의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

·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.

⑦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, 조사 결과 신청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⑧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진 후 지원을 받은 자의 폐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⑨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(還收)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원된 경우
3.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을 이행했음에도 다시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

⑩ 제1항에서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

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전업의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의 지원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‘폐업’은 ‘전업’으로 본다.
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.

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행조치명령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·조치에 관한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제8조(권한의 위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제9조(과태료)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·운영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제1호	150	200	300
나.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제2호	120	150	200
다.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제3호	100	130	150
라.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8조제1항제4호	90	120	150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18조제2항제1호	40	60	80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18조제2항제2호	50	80	100